

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997
------	------

2017년 8월 31일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14일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16일
- 라. 상정결과 :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(2017년 8월 31일, 상정·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본부장 서정협)

- 가.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함('15. 12. 15.).
- 나.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 치 :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

나. 규 모 : 지상 2~3층(임차면적 521.4 m^2 , 전용면적 396.6 m^2)

다. 사업주체 : 시청자미디어재단(방통위 출연기관) 서울센터

라. 주요시설 : 디지털교육실, 장애인방송제작실, 편집실, 사무실

마. 주요사업

- 미디어교육 지원 : 미디어체험 프로그램, 콘텐츠 제작 교육 등
-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: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
-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: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

바. 출연금액 : 86,687천원

사. 출연의 필요성

-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

<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>

제5조(운영비 분담)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.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분담한다.
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방송법」 제90조의2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욱)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회의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.
- 서울특별시는 2015년 12월 15일 서울시민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(Public Access)을 제고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재단과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하였음.

2016회계연도까지는 보조금으로 센터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나, 방송법 및 협약에 운영비 분담 방식이 출연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타 지역 센터도 출연금으로 교부받음에 따라

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존 보조금 교부 방식을 「방송법」 제90조의2 제7항 및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을 위한 업무협약」 제5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

2017회계연도부터 의회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비의 20%를 분담하고 있음.

방 송 법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을 위한 업무협약

제5조(운영비 분담)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담한다.

1. (생략)
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-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5년 5월 「방송법」 제90조의2에 근거하여 출범한 이후 2016년 2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단계로서 계속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.

방 송 법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.

-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에는 “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”은 출연금으로 8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음.

그러나 현재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을 위한 업무협약」에는 운영비의 20%를 분담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, 지원기간이나 지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센터의 운영방향 변화에 따라 향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임.

실제로 계속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사업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운영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서울시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.

□ 2018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예산(안) 총괄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6	2017(A)	2018(안)(B)	증감(B-A)	(B-A)/A
계	66,000	84,325	86,687	2,362	2.8%
출연금	-	84,325	86,687	2,362	-
자치단체경상보조금	66,000	-	-	-	△100%

-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3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2018년 하반기까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며, 전용공간이 설립될 때까지 현재 위치한 성북구 보문로 171번지 노블레스빌딩에서 임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.
- 의회는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인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(시청자미디어센터, 도서관, 생활체육시설, 공연장 등) 건립에 대해 의결(2017. 4. 28.)하였으며, 서울시 문화시설과는 건립예산으로 총 62억 4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2018년 하반기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음.

<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연도별 세부 예산> (단위:백만원)

구분 (전체)	계 (총사업비)	연도별			
		2016이전	2016	2017	2017 이후
계	25,960	50	996	4,756	20,158
국비	7,900			450	7,450
시비	6,242	50 · 타당성 용역비	996 · 설계공모비202 · 설계비794	3,206 · 시청자미디어센터 공사비 1,241 · 설계비 130 · 감리비 1,065 · 시설부대비 42 · 도서관 공사비 728	1,990 · 시청자미디어 센터공사비 1,241 · 감리비 31 · 도서관 공사비 718
구비	11,818			1,100	10,718

본 동의안에 따라 2018년도 운영비를 출연한 이후 하반기에 계획대로 준공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현 임시공간 연장 사용 등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또한 향후 서울시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활용 및 접근성 향상과 미디어교육과 관련하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다양한 제휴를 통해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현 서울시 정보화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7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참석위원 전원찬성)

9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99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함('15. 12. 15.)
- 나.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③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 치 :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
- 나. 규 모 : 지상 2~3층(임차면적 521.4㎡, 전용면적 396.6㎡)
- 다. 사업주체 : 시청자미디어재단(방통위 출연기관) 서울센터
- 라. 주요시설 : 디지털교육실, 장애인방송제작실, 편집실, 사무실
- 마. 주요사업
- 미디어교육 지원 : 미디어체험 프로그램, 콘텐츠 제작 교육 등
 -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: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
 -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: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
- 바. 출연금액 : 86,687천원

사. 출연의 필요성

-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

<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>

제5조(운영비 부담)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.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부담한다.
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방송법」 제90조의2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시설과 문화시설2팀 김강희(☎2133-4230)